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방시설)

제4조(소방시설등)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제6조(소방용품)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防炎)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등)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위원의 임명・위촉)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5조(위원의 해임・해촉)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제27조(위원의 수당)

제28조(운영세칙)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

제3절 방염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제32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제39조(시험 과목)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위촉)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제6장 보칙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등)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防炎)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 나.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 미터
-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4. 층수(「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 7.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노인복지법」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2) 「노인복지법」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나.「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8.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9.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10.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 방대상물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 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 2. 「건축법」제64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또는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헬리포트의 설치
-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활동 및 피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 등소화설비를 말한다.
-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6. 하나의 건축물에「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 정소방대상물
 -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운영의 대상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의료시설
 - 5. 노유자 시설

-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7. 업무시설
- 8. 숙박시설
- 9. 공장
- 10. 창고시설
-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12. 지하가(地下街)
- 13. 지하구
- 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 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2. 용접・용단(금속・유리・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8 제3호와 같다.
-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 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소방기술사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3. 소방시설관리사
- 4.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25조(위원의 해임·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신제품의 조사・분석
-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절 방염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3. 의료시설
-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5. 노유자 시설
-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7. 숙박시설
-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 소"라 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나. 카펫
 -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마.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 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건축법」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나. 합판이나 목재
 -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제32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
 - 2.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①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3.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①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 위험물기능장
- 3. 소방설비기사
-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 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수 있다.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제39조(시험 과목)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차시험
 - 가.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라.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 3) 「소방기본법」및 그 하위법령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그 하위법령
 - 5)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2. 제2차시험

- 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위촉) ①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4. 소방시설관리사
- 5. 소방기술사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의 과목
 -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제 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4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 과목과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3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6장 보칙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대한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제32조 각 호에 따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③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 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 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 2. 법 제1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3.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 4. 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 5. 법 제26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 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ㆍ 정지에 관한 사무
- 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9.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 10. 법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 11.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 12.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 13.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1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 15. 법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 16.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17. 법 제52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 18.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년 12월 1일
- 2. 제8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 3.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년 12월 1일
- 4.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년 12월 1일
- 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년 12월 1일
- 6. 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년 12월 1일
- 7. 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년 12월 1일
- 8. 제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년 12월 1일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